

오픈소스 담당자가 알아야 할 생성형 AI의 저작권 이슈

20241126 @ OpenChain Korea Work Group

삼성전자 오픈소스그룹

정윤환 변호사



특집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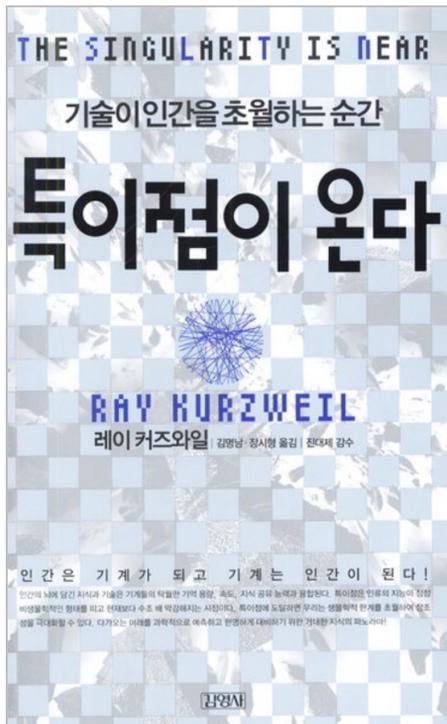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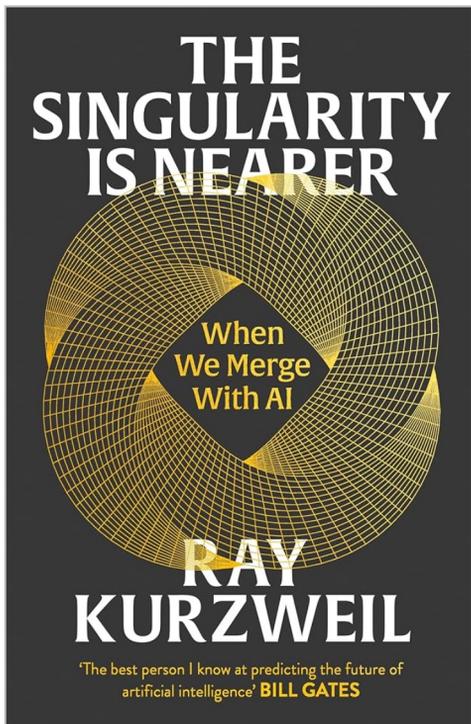
생성형 AI의 저작권 이슈

AI학습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및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

글 정윤환 삼성전자 변호사

“2045년 즈음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다.”

(Ray Kurzweil, The singularity in nearer, 2005)



이세돌, 5시간 혈투 끝 패배...280수만에 알파고 불계승

이은지 기자 | 승인 2016.03.15 18:15

유창혁 9단 "이세돌 약수 없었지만 알파고 후반부에 강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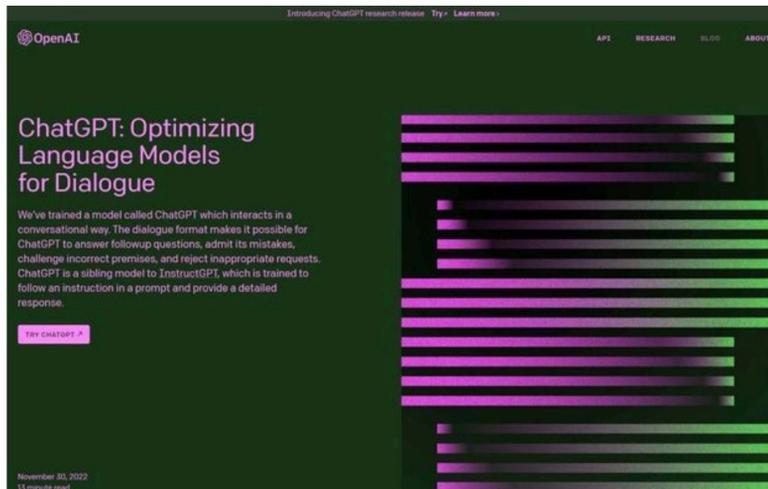
▲ 이세돌9단이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최종국에서 패했다 (출처=바둑TV중계화면 캡처)

[소비자경제=이은지 기자] 세기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마지막 대국은 결국 알파고에게 돌아갔다. 전적은 1승4패.

[출처 : 소비자경제 (<https://www.dailycnc.com/news/articlePrint.html?idxno=54280>)]

챗GPT MAU 1억 달성...인스타그램보다 15배 빠른 성장

뉴스1 업데이트 2023-02-03 14:53



챗GPT의 공식 누리집 갈무리

인공지능(AI) 챗봇 '챗GPT'(ChatGPT)가 출시 2달 만에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1억을 달성했다.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서비스로 평가받는 인스타그램·틱톡보다 빠른 역대 최고속 성장세다.

□ 법률·규제가 AI 기술의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함

- 다수의 소송 진행 중 (OpenAI를 상대로 한 소송만 16건 이상)
- 오픈소스 관련 소송은 이렇게 많지 않았던거 같은데...???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

1. 생성형 AI가 학습과정에서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2. 생성형 AI의 산출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쟁점 1.]

생성형 AI가 학습과정에서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AI타임스

깃허브, 코딩 관련 저작권 첫 소송서 승리..."원고는 피해 내용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 소유의 깃허브가 코딩 관련 사상 첫 저작권 소송에서 승리했다. 깃허브의 인공지능(AI) 코딩 툴 '코파일럿(Copilot)'이...

2024. 7. 8.



ITWorld Korea

깃허브 코파일럿 vs. 오픈소스 개발자 집단 소송, 개발자 측 패소

2022년 11월에 처음 제기된 이 소송은 깃허브가 공개 깃허브 코드 저장소 데이터로 코파일럿 AI를 훈련시킨 것이 깃허브에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따라 코드...

2024. 7. 10.



□ 법원의 저작권 침해 기각 사유

- “코파일럿이 생성한 결과물과 학습한 오픈소스 코드 간의 유사성(동일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 유사성이 입증되는 케이스에서는 저작권 침해 가능

□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의 핵심 요소 : “공정이용 (fair 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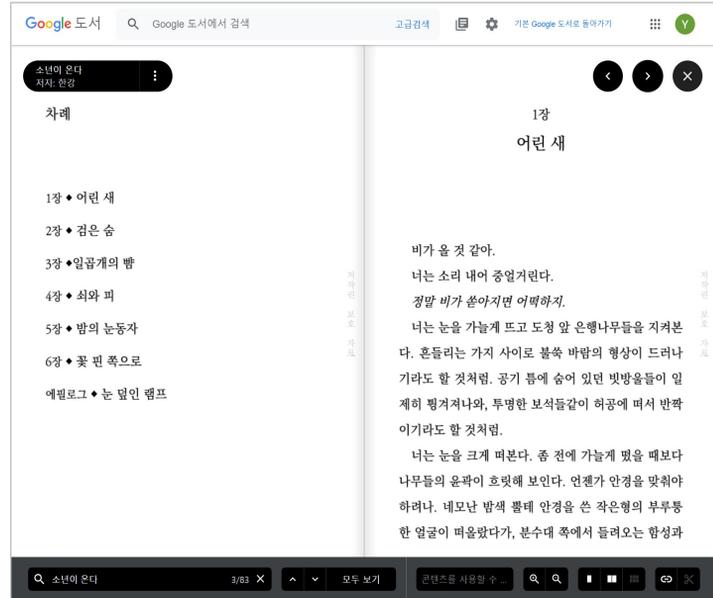
- 공정이용 여부 판단 기준

(1)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었는지

(2) 원저작물과 동일한 목적으로 이용되어 (대체품이 되어)

원저작자의 이익을 해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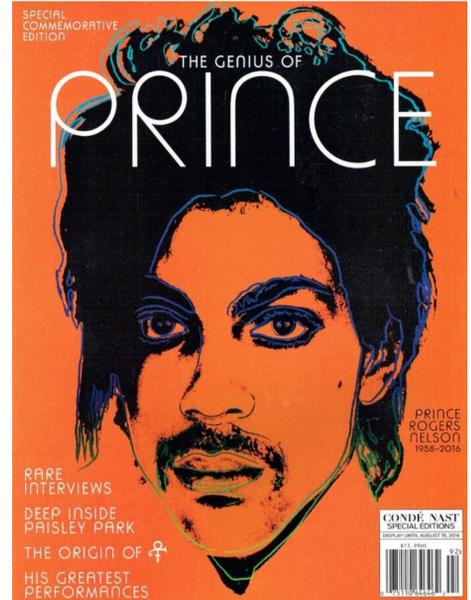
□ 공정이용 : 구글북스 사건 (2016년)



“전자 서적은 일반 도서의 대체 상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 도서의 판매를 촉진할 것”

→ 공정이용 ○ → 저작권 침해 X

□ 공정이용 : 앤디워홀재단 사건 (2023년)



“잡지 표지에 사용한 워홀 작품은 원본 사진의 대체품이다.”

→ 공정이용 X → 저작권 침해 O

□ 뉴욕타임즈 v. 오픈AI,MS

국제

NYT “AI 학습에 기사 무단사용”... 오픈AI-MS 상대 수조원대 손배소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3-12-29 07:27 ▾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생성형 인공지능(AI) 대화형 챗봇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투자사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며 수조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테크 기업이 AI를 학습시키는 데 저작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방대한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공짜 학습’에 대한 미 주요 언론사의 첫 소송이다.

NYT는 27일(현지 시간) 미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MS와 오픈AI가 허가 없이 172년 동안 자사가 쌓아 온 기사 수백만 건을 챗봇 제작에 사용했다”며 “저널리즘에 대한 NYT의 막대한 투자에 무임승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챗GPT가 NYT 단독 기사를 통째로 암기해 답변한 사례를 증거로 제출하며 AI가 “언론과 경쟁하며 (언론) 산업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구체적인 배상금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수십억 달러(약 수조 원)의 법적 및 실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1229/122819892/1>]

□ 뉴욕타임즈 v. 오픈AI, MS

Output from GPT-4:

exempted it from regulations, subsidized its operations and promoted its practices, records and interviews showed.

Their actions turned one of the best-known symbols of New York — its yellow cabs — into a financial trap for thousands of immigrant drivers. More than 950 have filed for bankruptcy, according to a Times analysis of court records, and many more struggle to stay afloat.

“Nobody wanted to upset the industry,” said David Klahr, who from 2007 to 2016 held several management posts at the Taxi and Limousine Commission, the city agency that oversees medallions. “Nobody wanted to kill the golden goose.”

New York City in particular failed the taxi industry, The Times found. Two former mayors, Rudolph W. Giuliani and Michael R. Bloomberg, placed political allies inside the Taxi and Limousine Commission and directed it to sell medallions to help them

Actual text from NYTimes:

exempted it from regulations, subsidized its operations and promoted its practices, records and interviews showed.

Their actions turned one of the best-known symbols of New York — its signature yellow cabs — into a financial trap for thousands of immigrant drivers. More than 950 have filed for bankruptcy, according to a Times analysis of court records, and many more struggle to stay afloat.

“Nobody wanted to upset the industry,” said David Klahr, who from 2007 to 2016 held several management posts at the Taxi and Limousine Commission, the city agency that oversees cabs. “Nobody wanted to kill the golden goose.”

New York City in particular failed the taxi industry, The Times found. Two former mayors, Rudolph W. Giuliani and Michael R. Bloomberg, placed political allies inside the Taxi and Limousine Commission and directed it to sell medallions to help them

챗GPT가 답변한 뉴욕타임스(NYT) 기사(왼쪽 문단)와 NYT 기사 원문(오른쪽 문단). 빨간색은 문구가 서로 동일한 부분이다. 2020년 폴리티카상 탐사보도 부문 수상작인 해당 기사는 18개월간 600건의 인터뷰, 100건의 정보공개청구와 함께 문서 수천 쪽을 분석해 썼다.

뉴욕타임스(NYT)가 소장에 밝힌 주장

“뉴욕타임스는 저널리즘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는데 오픈AI가 무임승차하려 한다”

“우리 콘텐츠를 도용해 개발한 제품(챗GPT)으로 우리의 독자를 빼앗아 갔다”

“챗GPT가 NYT 유료 기사를 문장 그대로 암기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한다”

□ 게티이미지 v. 스태빌리티시



게티이미지의 원본 이미지



스태이블 디퓨전이 생성한 이미지

게티이미지가 스태빌리티시를 제소하며 증거로 제출한 이미지

(출처: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

□ 생성형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까

- "공정이용"의 판단기준을 적용한다면?

(1)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었는지

(2) 원저작물과 동일한 목적으로 이용되어 원저작자의 이익을 해치는지

- 저작권 침해 찬반 논란

[찬성파] 원저작자 보호!! (유럽??)

[판대파] AI 산업 발전!! (미국??)

□ 우리나라는?

인공지능(AI) 학습의 저작권을 둘러싼 국내 논란

분야	내용
웹툰	올 6월 네이버웹툰 '도전만화' 코너에 'AI 웹툰 보이콧' 게시물 도배. "AI 웹툰이 작가들의 그림을 무단으로 긁어다 학습했다."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지난해 7월 AI 작곡가 '이봄'에 대해 저작권료 지급 중단. "협회에 등록된 음악들이 AI 학습 데이터가 돼 음악을 양산하고 있다. 기존 음악의 무단 사용은 절도와 다름없다."
언론	한국신문협회, 이달 2일 AI 학습 저작권 관련 의견서 국회에 제출. "정당한 권한 없이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
블로그, 카페 등	올 상반기(1~6월) 네이버 이용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 "일반 이용자가 블로그, 카페에 올린 글을 자사 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네이버 이용약관은 저작권 침해."

□ 우리나라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 방향 AI 학습을 위한 ‘크롤링(crawling)’은 저작권 침해 면책.

면책 요건 저작물에 포함된 사상, 감정을 향유하지 않아야 함.
정보분석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해야 함.

크롤링은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 분류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술.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등

현행 저작권법

법 조항	저작권법 제35조의 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의의	저작권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
문제	AI 학습이 통상적인 이용에 해당하는지, 저작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지 모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7인) EN

제안일: 2024.11.13 / 국회운영위원회

창작자의 저작 |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 인간의 창작물

발의자



발의자 전체보기 +

진행상황



접수일	제안회기
2024-11-13	제22대 (2024~2028)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AI를 창작에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AI를 이용한 생성물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 여부, 저작권 귀속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권리자와 사용자의 법적 책임 등이 불분명한 상황임.

특히, AI를 이용한 생성물이 인간의 창작물과 구분되지 않을 경우, 창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거나 소비자가 AI를 이용해 만든 콘텐츠를 인간이 제작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저작물이 AI를 이용하여 제작된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제7조의2 제1항)하고, 그 표시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함.

쟁점 2.

생성형 AI의 산출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 AI가 저작권자가 될 수 있나?

- 한국)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 미국) 실무와 판례에서 저작권자를 인간으로 한정
 - 미 저작권청, 저작자를 “The Creativity Machine” 으로
기재한 저작권 등록 신청 거절 → 불복 소송 → 기각

□ 여명의 자리야 (2023년)



- AI(미드저니)가 생성한 이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작가가 입력한 텍스트, 이미지를 선정하고 배치한 작품 구성의 저작권 인정

□ AI 수로부인 (2023년)



부활한 시무당_백남준



붉은 천룡에서 천신으로 변신하는 장면



용궁을 방문 중인 수로부인



푸른 해룡에서 해신으로 변신하는 장면

[출처 : 뉴스와이어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76884>)]

- 한국저작권위원회, 영화 자체의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인간이 AI 산출물을 선택·배열·구성한 것에 창작성이 있다고 보고 “편집저작물” 등록

□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

[찬성파]

- 창작자의 권리 보호 → 적절한 보상이 창작 활동·AI산업 촉진
- 생성형 AI와 카메라가 뭐가 다르냐

[반대파]

- 오히려 기존 창작자의 권리 침해
- 강력한 저작권 보호가 오히려 혁신을 억제
- 저작권 보호 범위 불명확

중국 최초 AI 저작권 소송 배상금 9만원... 원고 “안받겠다”

뉴스1 | 업데이트 2024-01-11 11:01 ▾

중국에서 시가 그린 그림에 대한 첫번째 저작권 소송에서 이긴 원고가 배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11일 중국 평파이신문에 따르면 시 그림에 대해 저작권 침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원고 리원카이는 최근 500위안(약 9만2000원)의 배상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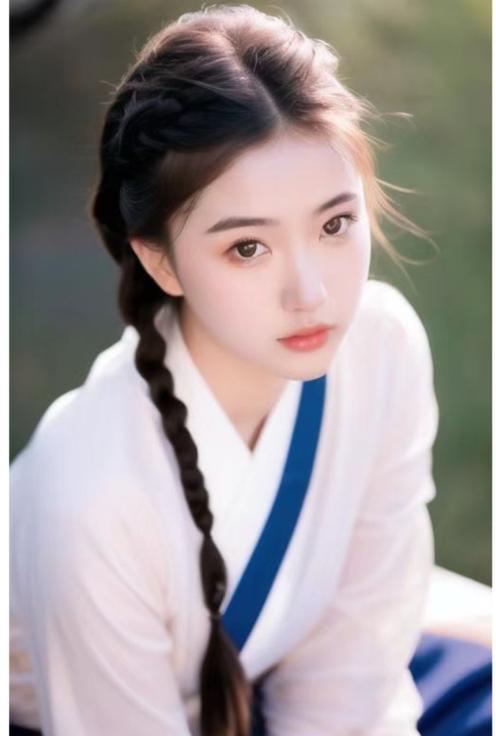
리원카이는 지난해 2월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 ‘봄바람이 부드러움을 선물한다’는 이름의 사진을 만든 후 SNS인 사오후슈에 게시했다. 같은 해 3월,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류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삼월의 사랑은 복숭아 꽃 아래’라는 이름으로 해당 사진을 올리게 된다.

이에 리원카이는 5월 자신이 만든 사진을 상대가 출처 표기없이 게시했다며 저작권과 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한다.

리원카이는 생성형 AI로 하나의 그림을 만들기 위해 제시어, 키워드 등 자신의 독창성이 반영된 명령어가 입력됐기 때문에 류 씨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5000위안의 경제적 배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원고 리원카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피고에 대해 리원카이에 공식 사과하고 500위안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생성형 AI를 이용해 제작된 사진에 대해 창작 권리를 인정해준 것이다. 다만, 이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피고는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출처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0111/122999345/1>]



리원카이가 AI로 만든 그림. 중국 웨이보 갈무리.

감사합니다.